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87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15. 4. .  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## 1. 폐지 이유

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의 서울시 이관이 2015년 3월 1일 완료됨에 따라 기존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」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조례 폐지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)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3. 5. ~ 3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
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
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없음

3. 미첨부 사유

-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업무이관이 2015. 3. 1.일자 완료됨에 따라 기존 조례 폐지함.

4. 작성자

- 성동구 보육가족과 정재신 (연락처 2286-6180)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5. 1.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5년 4월 13일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5년 4월 14일

다. 상정일자: 2015년 4월 23일

(제217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)

## 2. 제안이유

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의 서울시 이관이 2015년 3월 1일 완료됨에 따라 기존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」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)

다. 기 타

- 입법예고(2015. 3. 5. ~ 3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의 서울시로의 업무이관이 2015. 3. 1.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한 해당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,
- 본 조례를 통해 시행하던 외국인의 교육사업, 문화행사 개최, 각종 권익보호 사업 등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「성동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」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기에, 폐지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.

7. 토론요지: 없음.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